



수출환어음 매입 기본계약

당사자들:

[회사 이름]

및

(주) 한국 씨티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기본계약

본 수출환어음 매입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아래 당사자들 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된다.

(1)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 한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에 등록된 본점을 두고 한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은행인 (주) 한국 씨티은행 (이하 "씨티은행"이라 함).

(2) 한국 _____에 등록된 본점을 두고 한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중인 _____ (이하 "매도인"이라 함).

제 1 조 정의

“적용금리”는 수출환어음(아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씨티은행과 매도인이 수출환어음에 관한 할인금액(아래에서 정의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이율로서, 씨티은행과 매도인 사이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합의하거나 또는 개별매매계약서(아래에서 정의됨)에 표시된 이율을 의미한다.

“영업일”은 수출환어음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이 한국 서울에서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조달해오는 자금의 표시통화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는 일자를 의미한다. 단, 일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할인금액”은 수출환어음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이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동일자 포함)로부터 동 수출환어음의 만기일(동일자 포함)까지 실제 일수에 근거하여 해당 수출환어음의 액면금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인수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인수통지서에 할인금액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출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하였고 매도인이 본 계약 및 개별매매계약서에 따라 씨티은행에게 매도하는 환어음을 의미한다. 단, (i) 수출환어음은 한국의 수출자가 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아래에서 정의됨)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ii) 해당 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어음지급인이 지급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선적서류 및 기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에는 그러한 선적서류 및 기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단서 (ii)가 적용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은 상기 단서 (ii)에 언급된 선적서류 및 기타 서류를 포함한다.



“수출입계약”은 수출자인 매도인이 해외의 수입자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는 본 계약과 동일자 또는 본 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약정서로서 동 약정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매도인과 씨티은행간에 체결되는 수출입 등의 거래에 대한 기본 약정서를 의미한다.

“기타수수료”는 수출환어음의 만기에 어음지급인이 씨티은행에게 수출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상환수수료, 전신 비용(cable charge), 하자 수수료(discrepancy fee) 등의 수수료를 의미한다.

“수출화환어음 매입신청서”는 매도인이 씨티은행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의미한다.

“인수통지서”는 씨티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어음지급인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 그 인수사실을 통보해 주는 통보서로서 본 계약에 별지로 첨부된 통보서를 의미한다.

“매입대금”은, 수출환어음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이 본 계약 및 개별매매계약서에 따라 해당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 현재, 해당 수출환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서울영업일”은 매도인과 씨티은행이 한국 서울에서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별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의 제 5.01 항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매입요청

매도인은 아래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것을 씨티은행에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은 씨티은행이 정한 수출화환어음 매입신청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된 서면 요청서를 표지로 하여 씨티은행이 매입할 수출환어음을 씨티은행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3 조 소구권 없는 매입

3.01 씨티은행이, 매도인이 씨티은행에게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수출환어음의 어음지급인으로부터 인수통지를 받는 경우, 씨티은행은 매도인에 대한 소구권 없이, 해당 수출환어음 매입시점에 매도인과 합의되고 인수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 조건에 따라 해당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로 한다.

- 3.02 씨티은행이 인수통지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당해 수출환어음과 관련하여 소구권을 갖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의 제반 조항(제 3 조, 6 조, 7 조, 15 조, 16 조 및 동 약정서에 언급된 여신거래약관은 제외)은 해당 소구권 없는 매입에 적용된다. 다만, (a) 어떤 서류가 허위이거나 매도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입증된 경우 또는 (b) 해당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해당 수출환어음의 어음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씨티은행은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완전한 소구권을 갖는다.

제 4 조 소구조건부 매입

- 4.01 씨티은행이, 매도인이 씨티은행에게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인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씨티은행은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와 본 제 4 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소구조건부로 해당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씨티은행은 상황에 따라 해당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 4.02 씨티은행이 본 제 4 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소구조건부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의 제반 조항은 해당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적용되며, 매도인은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상 자신의 모든 의무 및 확약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진술, 보장하고 확약한다.
- 4.03 본 제 4 조에 따라 씨티은행이 소구조건부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그 어음지급인에 의하여 인수되고, 씨티은행이 매도인에게 인수통지서로서동 어음지급인의 인수를 통지하는 경우, 동 수출환어음 매입은 매도인에 대한 소구권 없는 매입으로 간주되며 그 후에는 제 3 조가 적용된다.

제 5 조 일반규정

- 5.01 매도인이 씨티은행에 제출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및 씨티은행이 매도인에게 인수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인수통지서는, 매도인이 씨티은행에게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수출환어음에 관한 개별매매계약서를 구성한다
- 5.02 씨티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즉시 (늦어도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수출환어음을 수령한 후 3 서울 영업일 까지) 매도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03 씨티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씨티은행은 예정된 매입일자에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의 계좌로 해당 수출환어음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씨티은행이 관련 서류의 하자를 시정할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씨티은행은 해당 하자가 외국환(수출입 등) 거래약정서 제 5 조에 따라 씨티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시정된 경우 또는 씨티은행이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하자환가료를 적용하여 매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 5.04 씨티은행의 매입대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매도인은 매도인과 씨티은행 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금액 만큼의 예상 기타수수료 금액을 씨티은행에 지급하거나 또는 씨티은행은 매입대금에서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동 예상 기타수수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씨티은행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기타수수료 금액이 씨티은행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예상 기타수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씨티은행은 매도인에게 그 차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씨티은행에게 그 협의에 따라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수수료(discrepancy fee)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수수료는 기 공제된 예상 기타수수료 금액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씨티은행으로부터 동 금액의 지급요구(이러한 지급요구에는 실제 하자 수수료(discrepancy fee)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수수료의 내역을 적시하여야 함)를 받는 즉시 씨티은행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5.05 수출환어음 지급인 소재 국가의 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당시 예정 만기일보다 후의 날짜로 실제 만기일이 정해지는 경우, 씨티은행은 인수통지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연기된 실제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할인금액에서 매도인이 씨티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예정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을 뺀 차액을 씨티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06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전달되는 증서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은, (과세권한을 가진 한국 또는 그 하위 과세당국이 씨티은행의 순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현재 또는 장래의 어떠한 세금, 부과금, 요금, 공제, 원천징수 및 한국 법률에 따른 그에 관한 어떠한 채무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공제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본 계약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동 요구되는 모든 공제(본 제 5.06 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추가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를 포함)를 한 후 씨티은행이 해당 공제가 없었더라면 수령하였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지급금액이 증가되어야 한다.



- 5.07 본 계약은 개별 거래에 관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상이 루어지는 거래 외에 매도인과 씨티은행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08 매도인은 씨티은행이 소구권 없이 또는 소구조건부로 제 3자(씨티은행의 계열사인지 여부 불문함)에게 수출환어음을 매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
- 5.09 (a) 본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모든 목적상 한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 (b)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0 본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되, 당사자들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 5.11 본 계약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불일치 하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수권된 자신의 대표자로 하여금 본 계약 모두에 명시된 일자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회사 이름]

서명:
이름:
직책:

(주) 한국 씨티은행

서명:
이름:
직책: